

평창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83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16. 4. .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1. 제안이유

-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을 개정하여 위법성을 해소하고 법에 합치하는 군정을 구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조례안 제3조제1항
 -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의 근거규정 마련
 - ※ 상위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직위의 자는 위촉직으로 구성
- 조례안 제4조제2항
 - 포괄적인 위원 해촉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
- 조례안 제9조
 - 조사·연구의 의뢰 주체를 위원회에서 군수로 변경
- 조례안 제10조
 - 상위법령의 근거 없는 참석·협조의무 삭제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붙임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

1) 입법예고(2015. 09. 23. ~ 2015. 10. 13.) 결과 : 제출의견 없음.

2) 규제심사, 부패영향평가, 성별영향분석평가 : 원안 동의

평창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은 「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 제5조에 따른다.

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군수는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·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.

제9조제2항 중 “제1항”을 “군수는 제1항”으로 한다.

제10조제1항 중 “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”를 “관계전문가의”로 한다.

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위원회의 구성)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.</p> <p>1. ~ 9. (생략)</p> <p>②·③ (생략)</p> <p>제4조(위원의 임기) ① (생략)</p> <p>②위촉직 위원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.</p> <p>제9조(조사·연구의 의뢰) ①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·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.</p> <p>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·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·단체 등에게 연구</p>	<p>제3조(위원회의 구성)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.</p> <p>1. ~ 9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·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4조(위원의 임기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은 「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 제5조에 따른다.</p> <p>제9조(조사·연구의 의뢰) ① 군수는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·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.</p> <p>②군수는 제1항 ----- ----- -----</p>

· 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.

제10조(관계기관의 협조요청) ①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, 관계기관·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·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-.

제10조(관계기관의 협조요청) ①

- 관계전문가의 -----

--.

<삭 제>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비용발생 요인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.

3. 미첨부 사유

-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 없음.

4. 작성자

작성 자	안전건설과장 장 근 용
연 락 처	(033)330-2406

관계 법령

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

제11조(지역위원회) ① 지역별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조정하기 위하여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 소속으로 시·도 안전관리위원회(이하 "시·도위원회"라 한다)를 두고, 시장(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7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 소속으로 시·군·구 안전관리위원회(이하 "시·군·구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1. 해당 지역에 대한 재난 및 안전관리정책에 관한 사항
2.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
3.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(중앙행정기관과 상급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)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추진에 관한 사항
4.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
5.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
6. 그 밖에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

② 시·도위원회의 위원장은 시·도지사가 되고, 시·군·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된다.

③ 시·도위원회와 시·군·구위원회(이하 "지역위원회"라 한다)의 회의에 부칠 의안을 검토하고,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관계 기관 간의 협의·조정 등을 위하여 지역위원회에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④ 삭제 <2013.8.6.>

⑤ 지역위원회 및 제3항에 따른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